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의 국제조세 법령과 조세조약 개정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제실에 1개 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는 대신 관련 정원 1명(4급 1명)을 감축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업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디지털자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채시장 선진화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범정부 혁신조달 추진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재무결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및 외화유동성 분석 업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정원 35명(8급 3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31명)하고, 한·중,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2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의 정원 9명(5급 6명, 6급 2명, 9급 1명) 및 복권위원회 사무처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재산소비세정책관 및 관세정책관”을 “재산소비세정책관 · 국제조세정책관 및 관세정책관”으로, “재산소비세정책관 및 관세정책관”을 “재산소비세정책관 · 국제조세정책관 및 관세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1호”를 “제18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9호”를 “제2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에서부터 제10항까지를 제7항에서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제15항을 제18항으로 하며, 제16항에서 제18항을 제15항에서 제1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제조세정책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19호부터 제21호 및 제26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1조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조세분석과 · 조세법령운용과 · 소득세제과 · 법인세제과 · 금융세제과 · 국제조세제도과 · 재산세제과 · 부가가치세제과 · 환경에너지세제과 · 관세제도과 · 산업관세과 · 관세협력과”를 “조세정책과 · 조세특례제도과 · 조세분석과 · 소득세제과 · 법인세제과 · 금융세제과 · 재산세제과 · 부가가치세제과 · 환경에너지세제과 · 국제

조세제도과·관세제도과·산업관세과·관세협력과”로 하고, 같은 조 제 9항(종전의 제8항) 제5호부터 제1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6. 제1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7.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 처벌법」·「조세범 처벌절차법」과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의 조정
8. 조세 법령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례, 법원 판례 등의 분석
9. 조세 법령의 해석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10. 세제(관세는 제외한다)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
11. 외국의 조세제도와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비교·분석
12. 세무사제도의 기획·운영·입안 및 세무사징계위원회 운영 등 세무사의 관리·감독
13.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제18항(종전의 제15항)의 제9호에서부터 제1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외국과의 조세조약 및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에 관한 제도의 기·입안
10. 외국과의 조세조약 및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 체결 및 개정 협상 총괄
11. 외국과의 조세조약 및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에 관

한 해석 및 상호합의

12. 외국과의 조세조약 및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에 관한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13. 외국과의 양자 및 다자간 국제조세 협력에 관한 사항
14. 자유무역협정(FTA) 조세 분야에 관한 협상
15. 조세투명성 및 정보교환을 위한 글로벌 포럼에 관련된 업무
16. 그 밖에 국제조세제도에 관한 사항

제20조제2항 중 “53명”을 “54명”으로, “10명”을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급 1명)은”을 “(5급 1명), 국가 재무결산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1,085”를 “1,08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074”를 “1,072”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37”을 “38”로 하고, 서기관 “70”을 “69”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0”을 “21”로 하고, 행정사무관 “390”을 “39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농업사무관·환경사무관·공업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76”을 “75”로 하고,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78”을 “77”로 하며, 행정주사보 “23”을 “40”으로 하고,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주사보·전산주사보·통계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26”을 “41”로 하며, 행정서기 “49”를 “14”로 하고, 행정서기보·세무서기보·관세서기

보·전산서기보·통계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 “9”를 “8”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1,086”을 “1,084”로 하고, 일반직 계 “1,075”를 “1,073”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37”을 “38”로 하고, 서기관 “70”을 “69”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0”을 “21”로 하고, 행정사무관 “404”를 “407”로 하며,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농업사무관·환경사무관·공업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77”을 “76”으로 하고,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78”을 “77”로 하며, 행정주사보 “24”를 “41”로 하고,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주사보·전산주사보·통계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26”을 “41”로 하며, 행정서기 “49”를 “14”로 하고, 행정서기보·세무서기보·관세서기보·전산서기보·통계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 “9”를 “8”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7”을 각각 “26”으로 하고, 행정서기 “2”를 “1”로 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세제실 국제조세정책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5년 9월 30일까지
-----------------	-------------------	----------------

별표 5 중 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세제실) ① (생 략)	제11조(세제실)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세 제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조세총괄정책관·소득법인세정 책관· <u>재산소비세정책관 및 관</u> <u>세정책관</u> 으로 하며, 조세총괄정 책관·소득법인세정책관· <u>재산</u> <u>소비세정책관 및 관세정책관</u>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 ----- ----- ----- ----- <u>재산소비세정책관·국제</u> <u>조세정책관 및 관세정책관</u> ----- ----- <u>재산</u> <u>소비세정책관·국제조세정책관</u> <u>및 관세정책관</u> ----- ----- -----.
③ 조세총괄정책관은 「기획재 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 5조제3항제1호부터 <u>제21호</u> 까지 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 한다.	③ ----- ----- ----- <u>제18호</u> ----- ----- -----.
④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기획 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22호부터 <u>제29호</u> 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 ----- ----- <u>제25호</u> -----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국제조세정책관은 「기획재

⑥ (생 략)

⑦ 세제실에 조세정책과 · 조세특례제도과 · 조세분석과 · 조세법령운용과 · 소득세제과 · 법인세제과 · 금융세제과 · 국제조세제도과 · 재산세제과 · 부가가치세제과 · 환경에너지세제과 · 관세제도과 · 산업관세과 · 관세협력과 및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⑧ (생 략)

1. ~ 4. (생 략)

5. 외국과의 조세조약 및 국가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에 관한 제도의 기획 · 입안

6. 외국과의 조세조약 및 국가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 체결 및 개정 협상 총괄

7. 외국과의 조세조약 및 국가

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19호부터 제21호 및 제26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⑧ ----- 조세정책과 · 조세특례제도과 · 조세분석과 · 소득세제과 · 법인세제과 · 금융세제과 · 재산세제과 · 부가가치세제과 · 환경에너지세제과 · 국제조세제도과 · 관세제도과 · 산업관세과 · 관세협력과-----

-----.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 · 입안

6. 제5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 · 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7.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

<u>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에 관한 해석 및 상호합의</u> 8. <u>외국과의 조세조약 및 국가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에 관한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u> 9. <u>외국과의 양자 및 다자간 국제조세 협력에 관한 사항</u> 10. <u>자유무역협정(FTA) 조세 분야에 관한 협상</u> 11. <u>조세투명성 및 정보교환을 위한 글로벌 포럼에 관련된 업무</u> 12. <u>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u> ⑨ · ⑩ (생략) ⑪ <u>조세법령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⑫ ~ ⑭ (생략) ⑮ ~ ⑰ (생략) ⑱ (생략)	<u>법」·「조세범 처벌법」·「조세범 처벌절차법」과「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의 조정</u> 8. <u>조세 법령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례, 법원 판례 등의 분석</u> 9. <u>조세 법령의 해석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u> 10. <u>세제(관세는 제외한다)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u> 11. <u>외국의 조세제도와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비교·분석</u> 12. <u>세무사제도의 기획·운영·입안 및 세무사징계위원회 운영 등 세무사의 관리·감독</u> 13. <u>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u> ⑩ · ⑪ (현행 제9항 및 제10항과 같음) <삭제> ⑫ ~ ⑭ (현행과 같음) ⑮ ~ ⑰ (현행 제16항에서 제18항과 같음) ⑱ (현행 제15항과 같음)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국제조세제도에 관한 사항	9. 외국과의 조세조약 및 국가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에 관한 제도의 기·입안
<신설>	10. 외국과의 조세조약 및 국가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 체결 및 개정 협상 총괄
<신설>	11. 외국과의 조세조약 및 국가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에 관한 해석 및 상호합의
<신설>	12. 외국과의 조세조약 및 국가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에 관한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신설>	13. 외국과의 양자 및 다자간 국제조세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14. 자유무역협정(FTA) 조세 분야에 관한 협상
<신설>	15. 조세투명성 및 정보교환을 위한 글로벌 포럼에 관련된 업무
<신설>	16. 그 밖에 국제조세제도에 관한 사항
①9 ~ ②2 (생략)	①9 ~ ②2 (현행과 같음)
제20조(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제20조(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3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25명, 6급 10명, 7급 1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연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27조(한시정원) ① 한 · 중, 한 · 중 · 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획재정부에 둔다.

② 삭 제

③ · ④ (생략)

② 54명, 11명, .

③ -----

(5급 1명),
국가 재무결산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

제27조(한시정원) <삭 제>

③・④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085</u>	• <u>1,083</u>	-2
일반직 계	• <u>1,074</u>	• <u>1,072</u>	-2
고위공무원단	• <u>37</u>	• <u>38</u>	+1
서기관	• <u>70</u>	• <u>69</u>	-1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농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 <u>20</u>	• <u>21</u>	+1
행정사무관	• <u>390</u>	• <u>393</u>	+3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 사무관 · 농업사무관 · 환경사무 관 · 공업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	<u>76</u> ·	<u>75</u> ·	-1
행정주사 · 세무주사 · 관세주사 · 전산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 사 또는 사서주사 ·	<u>78</u> ·	<u>77</u> ·	-1
행정주사보	<u>23</u>	<u>40</u>	+17
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 관세 주사보 · 전산주사보 · 통계주사 보 또는 사서주사보	<u>26</u>	<u>41</u>	+15
행정서기 ·	<u>49</u> ·	<u>14</u> ·	-35
행정서기보 · 세무서기보 · 관세 서기보 · 전산서기보 · 통계서기 보 또는 사서서기보 · ·	<u>9</u> · ·	<u>8</u> · ·	-1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086</u>	• <u>1,084</u>	-2
•	•	•	
•	•	•	
일반직 계	<u>1,075</u>	<u>1,073</u>	-2
고위공무원단	<u>37</u>	<u>38</u>	+1
•	•	•	
•	•	•	
서기관	<u>70</u>	<u>69</u>	-1
•	•	•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농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20</u>	<u>21</u>	+1
행정사무관	<u>404</u>	<u>407</u>	+3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 사무관 · 농업사무관 · 환경사무 관 · 공업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	<u>77</u> ·	<u>76</u> ·	-1
행정주사 · 세무주사 · 관세주사 · 전산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 사 또는 사서주사 ·	<u>78</u> ·	<u>77</u> ·	-1
행정주사보	<u>24</u>	<u>41</u>	+17
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 관세 주사보 · 전산주사보 · 통계주사 보 또는 사서주사보	<u>26</u>	<u>41</u>	+15
행정서기 ·	<u>49</u> ·	<u>14</u> ·	-35
행정서기보 · 세무서기보 · 관세 서기보 · 전산서기보 · 통계서기 보 또는 사서서기보 · ·	<u>9</u> · ·	<u>8</u> · ·	-1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복권위원회사무처 공무원 정원표(제21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27</u>	• <u>26</u>	-1
일반직 계	<u>27</u>	<u>26</u>	-1
•	•	•	
•	•	•	
행정서기	<u>2</u>	<u>1</u>	-1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기획재정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7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1. 제27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1. 제27조 제1항 관 련 한시정 원(존속기 한: 2022 년 12월 3 1일)	<삭 제>	-1. 제27 조제1항 관련 한 시정원 (존속기 한: 2022 년 12월 31일)
총계	2	<삭 제>	-2
일반직 계	2	<삭 제>	-2
행정사무관	2	<삭 제>	-2
·	·	·	
·	·	·	